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권 백 순
대한산업안전협회

I.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9.5%로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 정책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위치로 전락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목 아래 점진적인 규제완화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었고,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소기업에서는 겸직이 가능한 다른 분야의 직원을 채용하여 안전·보건에 관련된 담당자가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재해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직접 경비를 줄일 수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간접비용 및 산재 보험 요율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의 건전한 노동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찾아 보았다.

II. 중·소기업의 재해예방활동 및 발생 현황

2003년도 재해 통계를 분류해 보면, 전체 근로자 10,599,345명 중 중·소규모 사업장인 100인 미만 사업장에 6,384,231명으로 약 60.23%의 근로자가 종사하였고, 전체 재해자수 94,924명 중 73,317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전체 재해의 77.25%를 차지하였고, 평균 재해율 0.90보다 높은 1.15의 재해율을 나타냈다. 이는 100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 0.51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1. 중·소기업의 재해 손실 분석

가. 재해발생시 지급되는 비용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업재해 1건당 발생하는 손실비용 중 10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에 따라 평균 비용을 계산하였다.

2003년도에는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1인 보험지급액이 평균 약 2,600여만원이었다. 이를 하인리히 방식으로 간접 손실을 계산하면, 아래 표

와 같이 재해자 1인당 1억 3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산재보상 보험 및 간접비용에 대한 분석

항 목	지급(손실)비용	비 고
재해자수	94,924 명	2003년도 총 재해자수
산재보험 지급액	2,481,814 백만원	2003년 산재보험 총 지급액
재해자 1인당 보험료지급금액 (직접 손실액)	26,142 천원	2,481,814 백만원 / 총 재해자수
간접 손실금액	104,581 천원	보험료지급액 × 4 (하인리히 손실계산방식)
총 손실금액	130,710 천원	보험료 지급액(직접 손실액) + 간접 손실금액

직·간접손실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경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동료 근로자의 의욕 상실에 의한 생산 감소와 전직 및 이직에 따른 숙련근로자 양성에 따르는 손실 등을 감안하면, 재해로 인한 직·간접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분석

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본 고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을 조사·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규모 및 선임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1997년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발효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게 된다.

안전관리자가 타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할 사업장의 규모도 제조업은 300인 이상, 비제조업은 50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 완화 조치에 의해 제조업은 500인 이상, 비제조업은 1,000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됨은 물론 기존의 선임되었던 안전관리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타 업무를 겸임함에 따라 효과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선임 현황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규모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업무실태를 분석해보면, 조사 사업장의 대부분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28.7%)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겸직 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안전 관리자 선임 현황

규모	자체선임 (전담)	자체선임 (겸직)	안전관리 대행	미선임	계	비고
5~49인	72 (12.7)	290 (51.5)	97 (17.2)	104 (18.4)	563 (100)	선임의무없음
50인~499인	51 (12.8)	162 (40.8)	176 (44.3)	8 (2.0)	397 (100)	
300인 이상	240 (78.9)	49 (16.1)	13 (4.2)	2 (0.6)	304 (100)	
계	363 (28.7)	501 (39.6)	286 (22.2)	114 (9.0)	1,264 (100)	

다. 안전조직 체계와 산업재해의 연관관계 (50명~299명 규모의 사업장)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의 조직 체계와 산업재해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안전관리자 업무담당 현황

재 해	재해 없음	재해 1건이상	계	재해감소 효과
자체선임 (전담)	32 (62.75)	19 (37.25)	51 (100)	
자체선임 (겸직)	97 (59.88)	65 (40.12)	162 (100)	
대행	118 (67.05)	58 (32.95)	176 (100)	가장 높음
계	247 (63.49)	142 (36.51)	389 (1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예방효과가 67.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가 재해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체선임 안전관리자를 전담 및 겸직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세 중·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법의 보급 및 전문기관의 안전 관리 노하우를 통한 지원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장의 인력구조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는 방화관리자, 위험물 취급,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겸직함에 있어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안전관리 선임 대상 사업장의 선임 현황에 따른 효과 분석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안전관리자를 구조조정 하였다가 경제위기의 여파를 극복해 나오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선임 보다는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장이 증가되고 있다.

〈표 4〉 안전 관리대행 사업장 증가 현황

구분 년도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 증가율	비고
2000	5,204	319,587	-	
2001	5,546	343,173	10.67	
2002	5,932	388,086	9.35	
2003	6,389	436,645	7.70	
2004	7,083	482,764	10.86	

1.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재해율 분석자료 중 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을 100인 미만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표 5〉와 같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은 전사업장 재해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은 1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약 2.5배의 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 모	전 사업장	100인미만 누계	100인이상 사업장	
2003년	재해자수	94,924	73,317	21,607
	재해율(%)	0.90	1.15	0.51
	점유율(%)	100	77.24	22.76
2002년	재해자수	81,911	64,889	17,022
	재해율(%)	0.77	1.04	0.40
	점유율(%)	100	79.22	18.78

2. 중·소규모 사업장 중 안전관리 대행사업장과 전국의 재해율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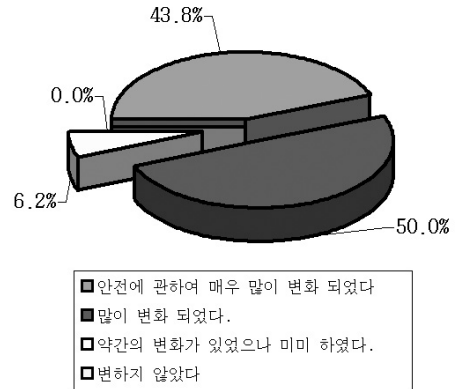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행 사업장 재해율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전국재해율을 비교 분석<표 6>하면, 안전관리를 선임(대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해율과 전국 평균 재해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행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재해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3. 안전관리 대행기관 업무의 효과 분석

이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설문 대상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 178 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안전 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때 사업주의 안전에 관한 의식의 변화 정도] 안전에 관한 의식의 전환이 매우 많이 변화되었다(43.8%)와 많이 변화되었다는 답변이(50.0%)로 전체 응답자의 93.8%가 변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업주의 관심 및 안전에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의 홍보 및 안내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보 및 안내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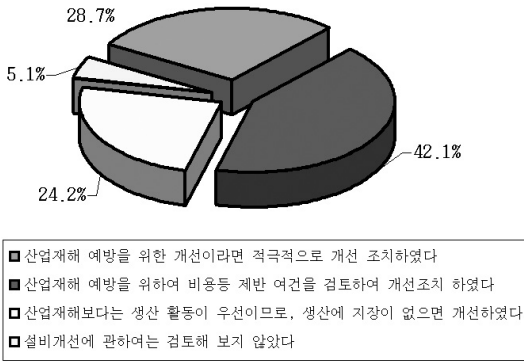
〈그림 1〉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의 지원시 안전에 관한 의식 변화

※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따른 위험 설비의 방호조치 및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건의에 대한 시행 정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였다는 응답이 28.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비용 등을 검토하여 개선하였다는 응답이 42.1%로 전체 응답자의 70.8%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설비 개선 및 안전을 위한 방호조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100인 미만 안전관리 사업장의 재해현황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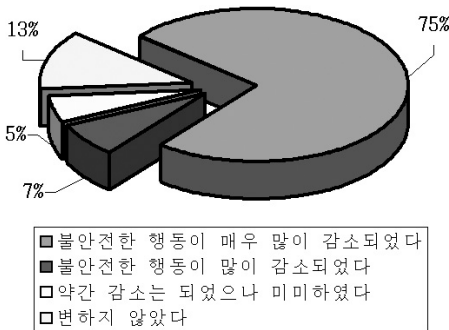
구분 년도	대한산업안전협회					노동부 (전국)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전년대비 감소율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2000	5,204	319,587	1,953	0.61	9.0	706,231	9,485,557	68,976	0.73
2001	5,546	343,173	1,835	0.53	13.1	909,461	10,581,186	81,434	0.77
2002	5,932	388,086	2,400	0.62	-17.0	1,002,263	10,571,279	81,911	0.77
2003	6,389	436,645	2,989	0.68	-9.7	1,006,549	10,599,345	94,924	0.90
2004	7,083	482,764	2,487	0.52	23.5				0.79

로 분석되었다.



〈그림 2〉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의 설비 개선요구에 따른 개선의지

※ [안전관리 대행요원의 정기 안전교육 실시로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감소 정도] 전체 응답한 167명 중 근로자의 무지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행동이 매우 많이 감소되었다는 응답이 74%, 불안정한 행동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응답이 7.2%로 전체 응답 중 81.2%가 불안정한 행동이 감소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에 사용하는 설비의 위험성과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 등을 항시 숙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안전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의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4.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제도의 변화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선임토록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신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참조하여, 일정기간동안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거나, 인건비 중 일부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를 도입하여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재해예방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환경 및 소방 등 타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사양되어가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전문교육기관의 육성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도입·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효과가 높은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리토록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IV. 결 론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의 손길은 더욱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활동보다는 비용절감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에 부딪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각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강화시키고,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가 설치(부착)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본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 제도의 도입·시행, 안전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 단속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재해예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5년에는 재해율을 1%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힘입어 1998년에는 0.68%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IMF경제위기의 벽에 부딪치고,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개정되면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안전관리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2003년도에는 0.90%로 후퇴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을 요약하였다.

1.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적극 활용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는 물론 안전관리자의 직무인 사업장내 위험요인의 개선 조치를 위한 기술적 제안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재해원인 조사 및 동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전파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따른 재해예방 효과는 뛰어나다 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자체 선임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지도·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전문기관의 활용에 따른 재해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여 고효율을 보이고 있는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활용이 사업장 경영에 보탬이 될 것을 확신한다.

또한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무재해가 달성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사업주의 안전에 관한 의식 변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의 정도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지도 감독 결과 대상사업장의 약 80%이상의 사업장이 행정, 사법처리가 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행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상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기업 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완화되기 이전의 선임기준으로 환원하여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토록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이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업무에 기초 자료가 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작은 보탬이 됨은 물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비용절감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원한다. 